

운영규정 개요

I. 기본정보

시 설 명	정담재활주야간복지센터	대 표 자	이 희 성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 2로 5-5 5층		
전 화 / F A X	(031)286-7000 / (031)286-7737	지 정 일 자	2022. 4. 7
기 관 기 호	2-41460-00947	기 관 기 호	2-41460-00947
기 관 형 태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	기 관 정 원	48인

II.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정원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은 48명이다. (인지지원등급은 정원 외 5명 추가 가능)

2.이용자 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터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III. 운영규정 개요 총괄

운영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센터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1.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2.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1.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3.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거나 급여비용을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 계약이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신원인수인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가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벽정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및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이용료 및 비용부담, 이용료 선정방식	1.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공제일수로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 일반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3.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그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아니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의 개정은 센터 실무자, 자체평가, 수급자 의견 수렴에 의하여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2.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의결 즉시 시행된다.

IV.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5층 주출입구 서류 수납장에 비치
---------	--------------------

V. 2026년 수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원	38,720원	35,740원	34,120원	32,490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원	51,930원	47,940원	46,300원	44,650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원	64,590원	59,640원	58,010원	56,360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76,820원	71,160원	65,750원	64,090원	62,460원(5) 56,360원(인지)
13시간 초과	82,370원	76,310원	70,500원	68,860원	67,240원(5) 56,360원(인지)

VI.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금액 (단위 : 원)
식사 재료비	3,800원
간식비	1,500원